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

상담센터 이용안내

상담대상

'공정거래법', '가맹사업법', '하도급법' 등에 관련된
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

상담방법

방문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상담시간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
우편 (우)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(사림동)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
전화 (055)211-7979 **팩스** (055)211-7770

온라인 상담 **경남도청 홈페이지** http://www.gyeongnam.go.kr/
홈 〉 분야별정보 〉 경제통상 〉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
친구처럼 편안한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!

055) 211-7979

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한 고충!

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
공정과 **상생**의 문화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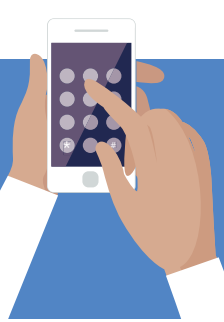

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
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055) 211-7979
친 구 친 구

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
불공정거래 행위란?

'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**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**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'를 말합니다.

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

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)의 불공정거래행위

거래거절 / 차별적 취급 / 경쟁사업자 배제 / 부당한 고객유인 / 거래강제 / 거래상 지위의 남용(판매목표강제, 불이익제공 등) / 구속조건부거래 / 사업활동 방해 / 부당한 지원행위

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가맹사업법)의 불공정거래행위

영업지원 등의 거절 /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/ 부당한 계약해지 / 가격의 구속 / 거래상대방의 구속 / 상품 · 용역의 판매제한 /영업지역 준수강제 / 구입강제 /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· 변경 / 부당한 강요 /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

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하도급법)의 불공정거래행위

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/ 부당 감액 / 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 /부당반품 / 기술자료 제공 요구 · 유용

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(대규모유통법)의 불공정거래행위

대금감액 /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/ 부당한 반품 / 판매촉진비용 전가 / 배타적 거래강요

-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 받지 않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
- 가맹본부의 부풀린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 후 실제 매출액이 50%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
-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등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경우
-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
-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하는 경우
- 하도급대금을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,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
-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
-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